

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14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3월 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2월 5일 김정태 의원 외 16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 :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2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정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·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,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이는 3·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3·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.
- 또한 과거 3·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3·1운동의 기념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, 오늘날의 3·1운동 및 3·1절 관련 기념행사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,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.

- 이에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·계승하고,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‘3·1운동 기념사업’에 대해 정의함(안 제3조)
- 라. 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·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3·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아. 3·1운동 기념사업에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대한민국헌법, 국가보훈 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제정안의 취지

- 본 제정안은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.
- 제정안은 13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먼저,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은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, 기본이념(안 제2조)으로 3.1운동의 자유·평등·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며, 정의규정(안 제3조)에서는 3·1운동 기념사업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.
 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로 3·1운동 기념 관련 시책의 수립·시행 등을 명시하고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5조), 3.1운동 기념사업 기본원칙(안 제6조),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7조), 3.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및 위원회 설치 등(안 제8조~안 제9조), 지원(안 제10조)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, 표창(안 제12조)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<조례안의 조문 배열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| 제8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) |
| 제2조(기본이념) |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|
| 제3조(정의) | 제10조(지원) |
| 제4조(책무) |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|
|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| 제12조(표창) |
| 제6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) | 제13조(시행규칙) |
| 제7조(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) | 부 칙 |

가. 총칙 규정(안 제1조~안 제5조)

-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기본이념(안 제2조), 용어정의(안 제3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5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3·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기본이념(안 제2조), 용어정의(안 제3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5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3·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총칙규정은 3·1운동 기념사업의 목적 및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, 3·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음.

나.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6조~안 제7조)

- 본 조례안은 3·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.
 - 세부 사항으로는 3·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의 충실한 반영 및 범시민적 참여 유도과 경축 분위기 조성,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·예술 및 선양행사 추진 등을 통

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음.

- 동 조례안은 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
2.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
3. 3·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
4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

5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본 조례안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원칙 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,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일종의 종합계획으로 보통 3~5년의 주기로 수립하므로, 동 조례의 5년 주기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.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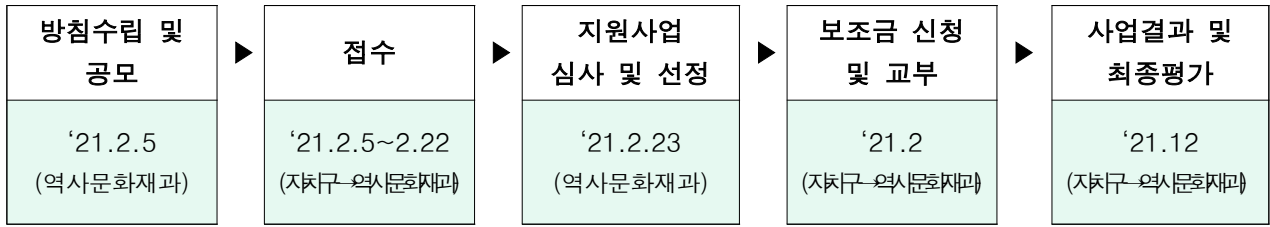
다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(안 제8조)

- 조례안은 3·1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▲3·1운동 관련 학술, 출판 및 문화·예술 사업, ▲3·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, ▲3·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 사업, ▲관련

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·관리 사업, ▲3·1절 경축행사, ▲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,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이를 통해 3·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2019년에 『3.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2019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계획』을 수립해 3개 분야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. 하지만 본 사업은 3·1운동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일회성·행사성으로 진행된 사항임.
- 서울시는 3.1운동 기념을 목적으로 총 2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먼저 복지정책실 소관으로 광복회서울특별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3·1절 민족정기선양대회’는 3.1절을 맞이하여 회원 위문 및 격려로 3·1운동 정신을 고취하고, 광복회원들이 단합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여 국가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사업내용으로는 3·1절 노래제창 및 만세삼창, 3·1운동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이며, 행사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라 할 수 있음.
-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3·1운동 기념사업’은 3·1운동 관련 행사 및 독립운동역사 교육, 유적지 탐방 등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. 사업 추진절차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, 신청서류 접수 후 내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형태임. 선정된 공모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며,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.

<표> 2021년 3.1운동 기념사업 추진절차



- 복지정책실 및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·1운동 기념사업은 일회성이거나 사업 범위가 다소 협소한 경향이 있음.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3·1운동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과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- 다만, 3·1운동 관련 학술, 출판 및 문화·예술사업, 교육 및 홍보사업, 관련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·관리사업의 경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 향후 과급력이 큰 사항으로 복지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. 그러므로 추후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라. 위원회의 설치 등 (안 제9조)

- 본 조례안은 3·1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을 위한 “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”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는 3·1운동 기념사업의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,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.

- 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위원회 설치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여겨짐.
- 또한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·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, 위원회 설치·구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마.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~안 제11조)

- 조례안(안 제10조)은 3·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3·1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.
- 또한 3·1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(안 제11조)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본 조례의 제정 사항인 3·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.

바. 그 외 규정(안 제12조~안 제13조)

- 제정안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(안 제12조)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(안 제13조)을 마련하도록 하였음.

사. 집행부 의견

-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

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한국독립운동을 대표하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-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.1운동 기념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, 3.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제정안의 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사항은 복지정책실에서 총괄 관리·감독하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역사적 고증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바,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14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달호, 김재형,
김제리, 김종무, 김평남,
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
송아량, 양민규, 이상훈,
이정인, 최정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·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,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이는 3·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「대한민국헌법」 전문을 통해 3·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.
- 또한 과거 3·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당시 3·1운동의 기념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, 오늘날의 3·1운동 및 3·1절 관련 기념행사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,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.
- 이에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·계승하고,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‘3·1운동 기념사업’에 대해 정의함(안 제3조)
- 라. 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·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3·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아. 3·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,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3·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, 3·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·1운동의 자유·평등·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3·1운동 기념사업”이란 3·1운동 및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3·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

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3·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6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) 시장은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1. 3·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
2.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
3.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·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

제7조(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3·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3. 3·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4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안
5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3·1운동 관련 학술, 출판 및 문화·예술 사업
2. 3·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
3. 3·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
4.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·관리 사업
5. 3·1절 경축행사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·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지원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2021020300000006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요청인 : 김정태 의원 | 담당 :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|
| 접수일 : 2021.02.03 | |
| 회신일 : 2021.02.05 | 내용문의 : 02-2180-7942 |

서울특별시 3.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○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 ≍ 600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
= 지원단가 × 1식
= 120,000천원

※ 참고) 2019년 서울시 3.1운동 및 임시정부 심포지엄-전시회 예산이 240,000천원이었으나
100주년이 아닌 평년도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가정

○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≍ 49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
= (참석수당 × 수당지급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 + (업무추진경비 ×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
= (150,000원 × 9명 × 6회) + (30,000원 × 10명 × 6회)
= 9,900천원
= 120,000천원

※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9명이며, 연간 총 6회 개최(2시간 이상)
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
붙임)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(안 제5조(기념사업)제2호 관련) : 기 추진

: 2020년 서울시 보훈단체 지원 예산(3,561,100천원) 중 3.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(100,000천원)와
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사업, C-47기 전시 및 교육,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지원예산 등 편성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